

문화다양성과 국제법

- 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

박 병 도*

김 병 준**

목 차

- | | |
|-----------------------|-----------------------|
| I. 국제규범으로서 문화다양성 | 6. 기타 주요 내용 |
| II. 문화다양성협약의 체결 배경 | VI.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제법적 쟁점 |
| III.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 | 1. 문화다양성 협약의 규범적 성격 |
| 1. 문화다양성의 개념 | 2. 인권으로서 ‘문화권’ |
| 2. 협약상에 나타난 문화다양성의 의미 | 3. 문화정책과 국가주권 |
| 3. 문화다양성협약의 목적과 지도원칙 | 4.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
| 4. 적용범위 및 정의 | VI. 결론 |
| 5.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 |

I. 국제규범으로서 문화다양성

오늘날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매력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하나의 유행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 문화다양성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여건을 제공하는 반면에,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국제규범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강사

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현혹적인 자명성’(deceptive simplicity)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다양성을 국제적·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라 함)는 유엔 체제 내에서 문화에 관한 사명을 띤 유일한 기관이다. UN체제의 양심이라고 자처하는 UNESCO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활동들을 보면, 실제로 문화다양성이 오늘날 제기한 도전 과제나 이와 관련된 전략의 변화에 대해 UNESCO가 주도하는 가운데 상당히 활발한 논쟁이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그리고 오랫동안 UNESCO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영역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었다. 문화 분야에서 유네스코가 채택한 다수의 협약, 권고, 선언 등은 비록 정도와 형식면에서 차이를 있지만,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¹⁾ 지난 60여 년 동안 UNESCO가 주도하여 문화 분야에서 체결한 국제조약은 6개이다. 이 중에 1972년의 세계유산협약(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03년의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5년 10월 20일 파리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이라 함) 등 3개의 조약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주축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분야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이들 3개의 조약은 공통적으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소통을 촉진(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정책을 마련하고 여러 조치를 시행하는

1) Guido Carducci, “UNESCO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in the Framework of other UNESCO Conventions”, *Proceeding of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al Rights and Diversity*(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4-15 November 2006), 109쪽.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 문화와 관련하여 당사국에 구속력 있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제법이 규범적인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 조약들은 모두 문화다양성을 역사의 유산이자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목적에 이러한 공통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외에 1954년의 전시 문화재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일명 헤이그협약), 1970년의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2001년의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등은 문화재와 문화유산, 무형적 차원의 문화 등의 훼손, 파괴, 절도, 강탈, 불법적 이동 등을 금지함으로써 문화다양성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고찰할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 및 문화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UNESCO가 주도하여 체결한 위 조약들과 2001년 11월 채택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³⁾(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이다.⁴⁾ 문화다양성협약은 협약의 당사국들이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확인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⁵⁾ 문화다양성이란 환경문제에 있어서 ‘종의 다양성’ 개념과 병행하는 것으로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보존해온 여러 문화들은 그 고유한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해야할 인류 공통의 의무가 있다는 인식에서

2) Guido Carducci, 앞의 논문, 109쪽.

3) 2001년 UNESCO 제31차 총회에서 18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4) 문화다양성협약 전문(前文) 21호(para.21).

5) 문화다양성협약 제1조(목적) 및 제6조(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 참조.

출발하고 있다. 각국의 문화상품 또는 문화서비스는 공동체의 역량을 반영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한 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의 문화가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능성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듯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는 문화를 구체화하는 표현수단인 동시에 국제거래 대상물로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⁶⁾ 이에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조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의 대표적인 형태는 수출입 규제 of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각국이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외국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국내시장으로의 침투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문화다양성협약과 자유무역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GATT, GATS 등의 WTO협정들과의 상충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⁷⁾

본 논문에서는 문화다양성이 국제규범으로서 국제법상의 개념으로 발전된 과정을 UNESCO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의 필요성과 문화다양성협약의 채택 배경을 고찰한다. 또한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내용과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분석하고, 문화다양성협약과 기존의 다른 조약, 특히 WTO협정의 규범 충돌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문화다양성협약의 체결 배경

문화다양성협약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시작된

6) 서헌제, “문화다양성협약과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연구 제15권 제2호(국제거래법학회, 2006), 130쪽.

7) 이재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지위”,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쪽.

문화다양성에 대한 격렬한 논의를 통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입장이 개진되고 서로 경쟁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진행되던 1986-1993년에 문화와 무역 간의 갈등이 다자간 통상협정에 전면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무역협상을 서비스부분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성(exception culturelle)’ 또는 ‘프랑스적 예외성(exception française)’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문화를 여타 다른 상품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⁸⁾ 원래 ‘문화적 예외성’은 문화를 서비스상품 교역의 국제적 자유화 과정에서 벗어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었지만 점차적으로 UNESCO를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들에서도 빈번하게 원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자유주의적인 세계화로 획일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항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차원인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문화적 예외성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⁹⁾ 프랑스를 위시한 8개 국가¹⁰⁾는 2003년 3월 제166차 UNESCO 집행이사회에 “문화협약 추진” 의제를 발의하였으며(UNESCO 166EX/28), 이것이 UNESCO 총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어 같은 해 10월에 열린 제32차 총회에서 결의안(32 C/Resolution 34)을 통해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만들 것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8) 그러나 문화적 예외성의 정확한 의미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에 문화적 예외성이란 문화가 자유무역주의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주장되었다(Christoph Beat Graber, “The New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A Counterbalance to the WT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제9권 제3호(2006), 554쪽.

9) 문화적 예외성이 단순히 문화의 예술적 혹은 미학적인 관념에 토대를 둔 영화와 시청각 창작물에 대한 선진국들의 경제적·문화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면, 문화적 다양성은 다양한 인류 사회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사회적 관습의 총체를 통합하는 인류학적 토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문시연, “문화적 예외 vs 문화적 다양성 논란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7권 제3호(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102-103쪽.

10) 프랑스, 캐나다, 독일, 멕시코, 세네갈, 모로코, 모나코, 그리스.

결국 154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제33차 UNESCO총회에서 찬성 148개국, 반대 2개국(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기권4(오스트레일리아, 니카라과, 라이베리아, 온두라스)로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된 것이다.¹¹⁾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의 기본 틀은 GATT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자유무역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관세율 인하의 범위와 내용을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갔다. 그 가운데에는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었다. 하지만 문화는 다른 상품 및 서비스와는 본질적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자유무역 조치의 예외가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UR 협상을 통해 임시적 성격¹²⁾의 GATT 체제가 항구적 기구 형태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체제로 변화 발전하였는데, WTO체제 하에서 문화상품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¹³⁾에 적용되게 되었다.¹⁴⁾ GATS는 제2조 1항에서 “각 회원국이 특정서비스 분야에 관하여 한 회원국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최혜국대우조항(most favoured nation clause, 이하 MFN)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분야에 있어 다른 어느 한 나라가 개방을 한 사례가 있으면 동 서비스분야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개방혜택이 모든 회원국에게 제공되어야

11) 박선희,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과 프랑스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9), 196-196쪽.

12) GATT는 그 당시 국제기구가 아니라 일반협정이었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라운드(Round)를 개최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13) GATS(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1947년 GATT(The 194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교역에 관한 1947년 일반협정)를 폭넓게 확장했던, 1994년에 무역 협상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 낸 우루과이 라운드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진 15개의 협정중의 하나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WTO를 창설해 이 협정을 강제하고 있다.

14) GATS는 기존의 GATT와 달리 문화상품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다.¹⁵⁾

그러나 최혜국대우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GATT체제와 달리 GATS에서는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GATS 제2조 2항은 MFN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다. 즉 회원국은 일반적인 MFN원칙의 요건에 위배되는 예외를 설정한 경우에 이러한 위배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70개 이상의 WTO 회원국이 협약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면제목록을 조건으로 서비스 양허를 수락한 바가 있다.¹⁶⁾

하지만 각 국가들의 입장에 따른 문화상품 및 문화적 서비스에 대한 교역 규정에 대한 입장 차이는 국가들 사이의 갈등의 불씨였다. 그동안 유럽이 중심이었던 세계 영화 시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수직적 합병, 할리우드 건설, 장르영화¹⁷⁾라는 미국 영화산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1920년대 대부분이 몰락한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¹⁸⁾를 도입하게 된다. 1970년대 초반에 개최된 도쿄라운드¹⁹⁾에서 20여 개국이 자국의 영화와 TV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관세 장벽을 마련하였고, 이에 미국은 불만을 터뜨리면서 ‘문화와 무역의 관계’ 논쟁이 시작되었다. 1990년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특별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GATT협상의 차원에서 새로운 협의기구를 창설하였고, 여기에서 절대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과, 문화적인 예외조항이 포함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유럽공

15) 조한승,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국제정치·국제법 학제적 조망”,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제4호(한국정치학회, 2008), 415쪽.

16) 김의수(역),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220쪽.

17) 서부극·공포영화처럼 기승전결 구조의 형식과 줄거리를 갖춘 영화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르영화라 함은 자본적 논리로 영화를 이해한 할리우드 중심의 상업영화로 대변된다.

18) 스크린쿼터제는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들이 시행하였다.

19) 1973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의 도쿄선언에 의거하여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쳐 이루어진 GATT 체제하의 다국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동체(EC)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게 된다. 그 뒤 1995년 1월에 출범한 WTO는 문화논쟁을 조정하기 위해 문화적 예외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문화를 전혀 새로운 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문화 관련 국제협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실현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이라는 기본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과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²⁰⁾

이에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1998년 문화정책에 관한 국제네트워크(INCP(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를 만들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제 문화다양성은 몇몇 소수 국가의 주장이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취급·옹호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도 문화다양성연대(CC D)와 문화다양성국제연대(INCD)가 각각 1998년과 2000년에 창설되어 문화다양성을 지지하는 국제비정부기구(NGO)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2001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UNESCO 제31차 총회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채택된다. 이 선언으로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국제적 규범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²¹⁾ 이를 바탕으로 2005년 UNESCO 제33차 총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 협약은 2007년 3월 18일에 발효되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지구적 차원에서 각 국가, 민족, 지역, 공동체의 고유의 문화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공공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문화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른 국제 규칙 및 제도와의 법률적 연계를 모색하기

20) 강문영, “문화다양성 수호는 인간존중을 위한 의무”, [특집-문화다양성 협약 ①] 협약이 채택되기까지 배경, 컬처뉴스, 2006년 2월 7일 기사. <http://news.vop.co.kr/A00000037099.html>

21) 조한승, 앞의 논문, 415쪽.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²²⁾

Ⅲ.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

1. 문화다양성의 개념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원래 생태학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지구상 생명 유기체의 총체적인 다양함을 일컫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구상 생물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성에 있다. 모든 살아 있는 유기체, 식물, 동물, 박테리아와 인간은 복잡하고 섬세한 관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존하고 번영한다. 종들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적응하면서 진화는 유전적 다양성의 도움을 받아 왔다. 즉 단일성은 완강함(inflexibility)과 비적응성(unadaptability)으로 한 종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다양성은 적응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가장 다양한 생태계가 가장 강한 생태계이다. 다양성은 안정성과 직접 관련되며 수천 년 동안 여러 다른 종류의 환경에 적응한 능력의 결과물이라 하겠다.²³⁾

다양성(diversity)은 자연 세계만의 특징이 아니다. ‘생명다양성’ 개념은 생물다양성을 넘어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는 문화 및 언어 다양성을 포함한다. 그동안의 인류역사에서 인간 사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 및 언어 행동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왔다. 즉,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서로 다른 방식, 서로 다른 사회 조직 유형, 서로 다른 일련의

22) 조한승, 앞의 논문, 414쪽.

23) Colin Baker, “Book Review of Tove Skutnabb-Kangas, 2001. Linguistic Genocide in Education - or Worldwide Diversity and Human Rights?”, *Journal of Sociolinguistics*, Vol.5, No.2, 279-283쪽. <http://akira.ruc.dk/~tovesk/rev-baker.htm>

믿음·가치·관행, 그리고 의식·정치·구전 이야기와 노래, 우리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상황, 일상생활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다른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²⁴⁾ 그러나 많은 산업 국가들이 세계화의 경제적 가능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경제대국의 팽창주의적 문화와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문화적 침투의 여파로 소규모의 취약한 사회집단이 가진 문화적 기준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²⁵⁾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만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류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²⁶⁾

문화다양성 협약은 주요 개념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 (1)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

24) UNESCO 한국위원회 역, 지구의 언어, 문화, 생물 다양성 이해하기(UNESCO, 2005), 20-21쪽.

25) 안토니오 루더(Antonio Rudder),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 다양성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2006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국제회의 발표문(UNESCO 한국위원회, 2006), 46-47쪽. 안토니오 루더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최저가 거래라는 시장 원칙이 문화상품에도 적용되면 문화상품은 그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화산업 특히 음악과 영화산업을 지배하는 강대국들로부터 유입되는 여러 가지 이질적 아이디어들은 전환기에 있는 저개발국의 문화적 현실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26) 문화다양성을 위한 운동은 개인적인 선택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동과 같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저항을 할 수 있고, 문화적 전통을 실천하는 것을 금지하면 불평을 할 수 있다. 문화적 권리는 개인적 권리이다. Vesselin Popovski, “Cultural Divers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Paul Meerts(ed.), *Culture and International Law*(Hague Academic Press, 2008), 59쪽.

27) 문화다양성협약 제4조.

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 (2) “문화 콘텐츠”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 (3) “문화적 표현”은 문화 콘텐츠를 지닌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 (4)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는 그 상업적 가치와 상관없이 그 당시 문화적 표현을 사용하고 목적으로 하며, 또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한다.
- (5) “보호”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존, 보호,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조치들의 채택을 의미한다. “보호하다”는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문화다양성협약이 여러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그 점이 문화다양성협약의 흠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화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간단하지 않고, 또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문화다양성협약의 범위와 목표 역시 복잡적이기 때문이다. 2001년 채택된 문화다양성선언은 문화다양성협약과 관련을 맺고 있는 연성규범으로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선언 서문은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징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화는 예술 및 문학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라고 선언함으로써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에
 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구성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개념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문화적 표현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대중문화, 레저산업의 출현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화와 경제적 글로벌
 화 과정의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다양성을
 내세우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화상품과 서비스들(서적, 신문, 영화, 멀티
 미디어 상품 등)이 상품이 아니라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성의
 표현이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의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도움은 자국 상품의 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작품의 창작
 ·생산·배포에 필요한 지지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적 수준에서 문화 공
 급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글로벌한 시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문화적인
 균질화, 획일화를 제한하면서 세계 수준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면
 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⁸⁾ 그리하여 문화다양성
 은 인류활동전반을 상품과 이윤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자유주의적
 인 세계화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교류와 대화에 의한 상호이해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권력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방식인 것이다.²⁹⁾

2. 협약상에 나타난 문화다양성의 의미

문화다양성은 역사적 사실이며 문화다양성의 보전은 하나의 목표로

28) 문화적 통일성은 문화의 소멸점이다. 문화적 검열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질서
 를 ‘존중하고’, 항상 ‘문화적으로 정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문화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양성은 다양하게 유지되고, 서로 경쟁하고 논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검열자의 가위로 ‘진정되거나’ ‘수동적이 될’ 때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지지 될 때 번성하게 된다. Vesselin Popovski, 앞의
 논문, 61쪽.

29) 문시연, 앞의 논문, 108쪽.

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 중요성은 문화다양성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다양성의 중요성과 의미에 해당하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문화다양성협약의 전문(前文)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협약 전문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이 갖는 중용성, 의미 및 가치는 다음과 같이 매우 넓다.

- (1)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중요한 특성이다.
- (2)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 (3) 문화다양성은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 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며, 그러므로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이다.
- (4)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역적, 국가간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
- (5)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적으로 승인된 다른 문서에서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문화다양성은 중요하다.
- (6)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
- (7) 사회 안에서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8)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들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남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 (9) 문화적 표현을 육성하고 새롭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 진보를 목적으로 문화의 발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을 강화해 주는 문화적 상호작용과 창의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10)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

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며, 그러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3. 문화다양성협약의 목적과 지도원칙

협약의 목적과 지도 원칙은 협약의 주된 목적과 강조점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다. 문화다양성협약은 그 체결 목적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즉 동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그리고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와 발전 간 연관성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에 대한 인정하며,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유지, 채택, 실행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³⁰⁾

그리고 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협약의 지도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문화다양성의 지도원칙은 인권 및 표현, 정보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과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 원칙,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의 인정과 존중의 원칙,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원칙, 발전의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상호 보완성 원칙,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수요건이라는 원칙, 문화적 표현에 대한 형평한 접근의 원칙,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균형성의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³¹⁾ 특히 형평한 접근의

30) 문화다양성협약 제1조.

원칙, 개방성 및 균형성의 원칙을 통해 원칙들의 법적 가치들을 협약 조항에서 재확인하는 것은 이 원칙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협약의 내용들이 협약의 원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목적과 행위의 촉진을 위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테두리가 될 수 있다.³²⁾

위의 지도원칙은 각 당사국의 문화다양성협약 해석 및 이행에 대한 기본지침으로서 당사국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인위적 또는 재정적으로 잘못 해석·이행됨으로 인한 동 협약의 취지 및 목적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도원칙은 문화다양성협약이 규정하는 당사국의 권리·의무 행사를 위한 일종의 법적 틀로서 이해되어야 한다.³³⁾

4. 적용범위 및 정의

협약의 적용범위는 꽤 넓으며 여기에서는 협약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촉진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채택한 정책과 조치에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이 적용범위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문화 정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정책과 조치에

31) 문화다양성협약 제2조.

32) Nina Obuljen, "Principles of cultural pluralism,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society, with reference to UNESCO'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instruments such as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MULTICULTURAL POLICY FOR UM - UNESCO'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Instruments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New Challenges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6 December 2008), 17-18쪽.

33) 이한영,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쟁점 및 한계," 통상법률 통권 제83호(법무부, 2008), 21쪽.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³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사국의 해당 정책 및 조치가 전적으로 문화에만 국한된 정책 및 조치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 정책 및 조치는 문화 정책과 조치는 문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등의 분야에서 개인, 집단, 사회 등의 문화적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 관련된 정책과 조치를 말한다.³⁵⁾ 즉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 분야이든 여타 분야이든 관계없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증진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 및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³⁶⁾

그리고 협약은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그 상업적 가치와 상관없이 그 당시 문화적 표현을 사용하고 목적으로 하며, 또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하며, 문화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한다.”라고 정의하여 협약의 적용 범위가 문화 상품과 서비스까지 포함한다는 포괄적 성격을 명문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협약상의 개념 정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의이다. 국제법규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양면적인 성격을 명시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5.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협약의 당사국은 UN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 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조치를 채택하고, 이 협약

34) 문화다양성협약 제3조.

35) 문화다양성협약 제4조 6항.

36) 이한영, 앞의 논문, 23쪽.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이와 함께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문화 정책과 조치를 동 협약의 규정에 부합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³⁷⁾ 협약은 각 체약국이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천명하면서도,³⁸⁾ 각 체약국이 국내의 문화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의무 조항을 설정하고 있다.³⁹⁾ 이와 함께 협약 제6조와 제8조에 의해 허용된 문화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이행해야 할 보고와 정보공유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⁴⁰⁾ 이 경우에 정보공유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협약은 체약국에게 자국 영토 내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UNESCO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⁴¹⁾ 또한 각 체약국에게 다른 국가의 문화교류 및 다른 국가 내의 문화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국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⁴²⁾ 각 체약국에게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⁴³⁾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뿐 아니라 예술가, 문화전문가, 활동가 등에게 우선적 대우를 허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해야 한다는 독립적 조항을 둬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문화

37) 문화다양성협약 제5조(권리 및 의무의 일반규칙).

38) 문화다양성협약 제6조, 제8조 제1항과 제2항.

39) 문화다양성협약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40) 문화다양성협약 제8조 제3항과 제9항.

41) 문화다양성협약 제9조 a호; 그런데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42) 문화다양성협약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43) 문화다양성협약 제21조(국제적 협의와 협력).

보호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의무적인 성격의 “해야 한다(shall do)”⁴⁵⁾가 아닌 권고적 성격의 “노력해야 한다(shall endeavor to)”라는 표현에 머무르기 때문에 당사국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에 대한 논란 여지를 협약 스스로 가지고 있다.⁴⁶⁾ 이와 함께 문화다양성협약의 분쟁해결절차가 당사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도 협약의 준수 의무를 약화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할 수 있다.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분쟁당사국들은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 분쟁 당사국들이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주선이나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교섭이나 주선, 중개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조정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⁴⁷⁾ 그런데 당사국은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시에 위의 조정절차를 수락하지 않음을 표명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⁴⁸⁾ 위 조정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당사국의 권리·의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WTO협정과 대조되는 부분으로서,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 의무가 실효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점이다.⁴⁹⁾

44) 박경신,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 사이의 상호지지적인 관계정립을 위하여,” 법과사회 제34권(법과사회이론학회, 2008), 405쪽.

45) 의무적 성격으로 표현된 경우 - “장려해야 한다(shall encourage).”, “촉진해야 한다(shall facilitate).”, “협력해야 한다(shall cooperate).” 등.

46) 이한영, 앞의 논문, 25-26쪽.

47) 문화다양성협약 제25조(분쟁해결) 제1항, 제2항, 제3항.

48) 문화다양성협약 제25조 제4항.

49) 이한영, 위의 논문, 27쪽.

6. 기타 주요 내용

협약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통합기구 또한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한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⁵⁰⁾ 지역경제통합기구가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협약의 몇몇 조항들이 유럽의 일부 사회에 배타적으로 혹은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⁵¹⁾ 이는 문화다양성의 번영의 선결 조건인 균형 잡힌 문화교류를 이루기 위해 협약 체결의 중요함을 인식한 것이다.

Ⅵ.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제법적 쟁점

1. 문화다양성 협약의 규범적 성격

문화다양성협약의 내용은 많은 다른 국제법 또는 국제조약과 같이 국가중심적(state-centric)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규범적 성격을 살펴보면 매우 느슨한 연성법(soft law)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동 협약의 규범력은 제한적이다. 비록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에 찬성했지만, 찬성한 국가의 수 그 자체가 곧 협약에 대한 실효적인 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행수단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화다양성협약과 다른 국제조약과의 관계 역시 여전히 모호하다. 따라서 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제한되어 있고, 국가들의 동의의 측면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을 거부한 미국의 힘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가 협약의 실제적 실천으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다.⁵²⁾

50) 문화다양성협약 제27조 제3항.

51) Nina Obuljen, 앞의 논문, 32쪽.

2. 인권으로서 ‘문화권’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과 인권과의 관계에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라는 점에서 국제 인권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존의 국제인권조약들은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틀을 제공하는 것일까? 문화다양성협약은 그 전문(前文)에서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적으로 승인된 다른 문서에서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지도원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 제목 하에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 및 표현, 정보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0년 2월 22일 UN 총회 결의안 ‘인권과 문화다양성’(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⁵³⁾은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universal), 불가분하고(indivisible), 상호의존적이며(interdependent), 상호 관련되어(interrrelated) 있으며, 국제공동체는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법(a fair and equal manner)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인권을 다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이런 인식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상호적 풍요의 원천이며, 다른 문화권의 개인 및 다양한 문화와 세계의 나라들 사이의 평화, 이해, 우호에 필수적임을 선언하고 있다.⁵⁴⁾ 이 결의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 즉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둔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52) 문화다양성협약의 국제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한승, 앞의 논문, 417-424쪽 참조.

53) UN G.A. A/RES/54/160, 22 February 2000.

54) <http://www.undemocracy.com/A-RES-54-160.pdf>.

오랜 관심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⁵⁵⁾

그리고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특성을 정의하고 평화와 안전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역량과 가치에 자양분을 주며 인권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문화적 표현을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개별적 인간을 소외시키고 심지어 폭력적인 갈등을 조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별도의 인권으로서 문화정체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해 온 것이다. 사실, 국제인권협약에는 문화권과 자유의 범주 아래 체계를 갖추게 될 문화정체성을 진흥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권과 자유는 국제인권법에서 제대로 발전되어 오지는 못하였다. 그것들은 내용과 범위에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고, 이행 차원에서도 종종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협약은 그 적용범위 측면에서 볼 때 당사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조치들에 적용된다.⁵⁶⁾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보면 문화다양성 협약은 당사국에게 그러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협약은 UN총회가 채택한 아래의 두 인권관련 문서상의 규정과 기본적인 접근방법이 다르다. 이들은 문화 영역에서 개인에 대한 ‘권리’부여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55) Nina Obuljen, 앞의 논문, 15쪽.

56) 문화다양성협약 제3조.

그리고 1966년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5조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 ①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②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③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문화권은 보편적이고 다른 인권과 분리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인 인권의 핵심요소이다. 창조적 다양성의 번성은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3조⁵⁷⁾와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의 전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자신의 모국어로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다양성협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협약의 지도원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을 명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⁵⁸⁾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능력뿐만 아

57)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8) 문화다양성협약 제2조 제1항.

나라 인권과 표현 및 정보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문화다양성협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러한 제한규정은 매우 중요하다.⁵⁹⁾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협약은 개인에게 ‘문화권’(cultural rights)을 부여하는 문제보다는 당사국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동 협약만을 근거로 문화권을 하나의 인권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협약과 위에서 살펴본 국제인권문서들 뿐만 아니라 2001년 11월에 채택된 세계 문화다양성선언의 내용을 반추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선언은 인권의 존중의 맥락에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언 제5조에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서의 문화권’이라는 제목으로 문화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권은 보편적, 불가분적, 상호의존적인 인권의 총체이다. 창조적 다양성의 번성으로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와 15조에서 정의된 바 있는 문화권의 완전한 이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들을 표현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언어, 특히 모국어로 그들의 작품을 보급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문화정체성을 온전히 존중하는 질적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에 입각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문화적

59) 2003년 체결된 무형유산보호협약에서도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무형유산보호협약 제 2조 1항은 “이 협약의 목적상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는 것은 공동체, 집단, 개인의 상호 존중에 대한 요구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뿐 아니라 현존하는 국제인권과 양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은 문화생활 참여권, 표현의 자유, 교육권 등을 포함하여 문화와 관련한 기존의 인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 선언은 주로 회원국이 존중해야 하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선언에 첨부된 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회원국이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회원국은 문화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결의되었다.

3. 문화정책과 국가주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협약은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 규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⁶⁰⁾ 첫째, 당사국은 UN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 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며, 동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주권적 권리가 있다. 둘째,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동 정책과 조치,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진다. 협약의 이 원칙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을 다른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의무사항들과 조정하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협약 20조에 다른 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⁶¹⁾

60) 문화다양성협약 제5조.

61) ①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는다.

가.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 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한다.

나.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4.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문화를 자국의 발전 정책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러한 기본 구도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⁶²⁾

이처럼 협약 제13조는 지속가능 발전에서 문화가 담당하는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인정한다면 문화다양성은 좀 더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이제 국제법(조약)에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당사국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

V. 다른 국제조약과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국내적 조치를 취할 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의 대표적인 형태는 수출입 규제의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이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의 문화상품과 문화 서비스의 국내시장으로의 침투에 대한 규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규제는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WTO협정들과의 충돌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⁶³⁾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② 이 협약 상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여타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62) 문화다양성협약 제13조는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차원에서 문화를 자국의 발전 정책에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다양성협약 당사국이 자국의 문화 다양성 보존을 이유로 외국의 문화 상품 및 문화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경우 기존의 WTO체제가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자국의 것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과의 자국문화산업에 대한 보호조치와 WTO협정들이 구축한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의 구조가 서로 충돌될 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⁶⁴⁾

문화다양성협약과 다른 국제조약과의 관계는 협약 제20조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화다양성과 다른 국제조약과의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20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는 문화다양성협약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란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다. 제20조 1항은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하고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 시키지 않으면서, 이 협약

63) 이재민, 앞의 논문, 2쪽.

64) 박경신, 앞의 논문, 395-396쪽. 2005년 8월 25일 UNESCO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문화다양성협약 정책토론회에서 이근관 교수는 WTO규범 체계의 경우, 규범적 밀도가 높고 다른 규범에 대해 폐쇄적이기 때문에 법적 완결성이 낮은 문화다양성협약에 의해 규범적 간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도 문화다양성협약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박경신 교수는 문화다양성협약이 국제규범으로 불완전하더라도 WTO협정 역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규범과 개념으로 돼 있어 그러한 여지를 잘 파고들면 WTO협정을 친문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덕근 교수는 문화다양성협약의 내용이 여타 국제통상협정상의 의무사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나 법적 구속력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WTO를 비롯한 여타 무역협정에서의 시장접근 양허 수준과 내용을 반복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문화와 무역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도 WTO가 자체 규범을 지켜낼 것으로 판단된다고 문화다양성협약의 규범적 한계를 언급했다. http://www.unesco.or.kr/upload/etc/200509_592.pdf.

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 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고 명시하면서 동조 2항에 이 협약 상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여타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당초 문화다양성협약과 다른 조약의 관계에 대해서 2004년 초안 제19조에 두 가지 옵션⁶⁵⁾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어느 것도 채택되지 못하고 제3의 안이 최종초안에 반영되어 현재의 제20조 내용으로 채택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협정 제20조 1항이 “이 협약은 다른 어떤 협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면서....”라고 규정하여 문화다양성협약보다 다른 조약을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동조 2항에서는 “다른 여타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의 충돌할 경우 이와 같은 다른 국제조약과의 관계정립 규정 하에서 어떤 해석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은 각각의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의 경우 자발적인 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WTO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두 조약의 관계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⁶⁶⁾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은 문화다양성협약 제20조 1항(b)이 자신과 기존의 다른 통상조약과의 충돌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

65) 옵션 A: 1. 본 협약의 어떤 것도 현행의 국제 협약에 따른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기준 국제 문서와 관련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이 협약의 조항은 기존의 국제문서에 나타난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문화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협약에서 파생하는 당사국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옵션 B: 본 협약의 어떤 조항도 기존의 국제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66) 박경신, 앞의 논문, 416쪽.

고 있다는 것이다. 동 조항은 다른 조약을 해석·적용하는 경우와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고려하는 규정으로, WTO패널에서 회원국 정부의 문화다양성 보호조치가 WTO의 자유무역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이 분쟁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 WTO설립협정 제4조(3)에 의해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은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이하 DSU)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DSU 제1조에 의하면 패널은 WTO에 의해 관할되는 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⁶⁷⁾ 또한 DSU 제11조에 의하면 패널은 어떠한 정부의 조치가 WTO협정 범위 밖의 다른 조약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룰 권한이 없다.⁶⁸⁾ 그러나 구체적 사안을 해결할 때 다른 조약을 고려해야만 WTO협정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DSU 제3조 2항⁶⁹⁾은 이러한 경우 관련 조약을 원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67) DSU 제1조(대상범위 및 적용)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는 이 양해의 부록 1에 연결된 협정(대상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쟁에 적용된다. 또한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협정(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이 양해만을 고려하거나 동 협정 및 양해를 다른 대상협정과 함께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이 양해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68) DSU 제11조(패널의 기능) “패널의 기능은 분쟁해결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 합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69) DSU 제3조(일반규정) 제2항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는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전과 예견가능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이다.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은 이 제도가 대상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대상협정의 현존 조항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정은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고 있다. 이러 맥락에서 비추어 보면 WTO패널에서 문화다양성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WTO협정과 함께 문화다양성협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⁷⁰⁾

WTO협정의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문화다양성협정 체결을 반대했던 미국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1조⁷¹⁾의 의미에서 WTO 회원국 일부에 의한 WTO협정의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⁷²⁾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협약은 제20조 2항⁷³⁾의 ‘구법우선방식’⁷⁴⁾에 따라 WTO협정상상의 권리와 의무(또는 기존협정)가 우선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⁷⁵⁾ 결국 문화다양성협약 제20조는 서로 모순이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주장을 적절히 타협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의 의미를 축소할 수 있는 제20조 제2항은 기존의 통상조약에 있어서 문화다양성협약을 고려

70) 서헌재,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법리적 연구: 문화상품의 국제교역과 문화권을 중심으로,” 중양법학 제10권 제2호(중양법학회, 2008), 224쪽.

7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1조(일부 당사국에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 1. 다자조약의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그 당사국 간에서만 조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 (a) 그러한 변경의 가능성이 그 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또는 (b) 문제의 변경이 그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고, 또한 (i)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며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ii) 전체로서의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효과적 수행과 일부 변경이 양립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72) 박현석,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의 충돌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2호(대한국제법학회, 2006), 52쪽.

73) 문화다양성협약 제20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2항 “이 협약 상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여타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7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적용) 제2항 “조약이 전조약 또는 후조약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거나 전조약 또는 후조약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75) 박경신, 앞의 논문, 418쪽.

해야 하는 협약 제20조 제1항과 함께 잠재적 해석상 논란을 야기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Ⅵ. 결 론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인권과 인류의 미래 발전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문화다양성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고, 문화와 개발 사이의 관계와 문화 활동,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독창성을 이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005년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해 많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 및 NGO가 환영하며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동 협약의 채택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진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법적 차원에서 동 협약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문화에 대해 새로운 지위를 보장하여,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다른 분야의 조약에 비해 낮게 평가한 기존의 법률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협약은 정치적으로 문화사적으로 무척 중요하지만 협약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들의 실제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장 예민하게 논란이 되었던 협약 제20조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것인가가 많은 국가들이 예의주시하는 관심 사항이다. 당사국이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는 문화적인 목적에 여타 공공정책의 우선순위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20조의 규정은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다수 국가들의 정치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약과

새로운 지위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한 이유 중 하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특별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의 적절한 지위를 보장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현 WTO체제나 FTA상의 “문화적 예외성”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협약 제20조의 내용이 아마도 현단계에서 이를 수 있는 합의의 최고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이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동 협약은 주권 국가가 자국 내 문화다양성을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채택하고 정책을 규율할 권리에 대해서는 강하고 분명하게 재확인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약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효과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기대가 반감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국가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원칙을 상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협약이 발효는 되었지만 협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들의 비준이 필요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 문화산업이 발달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 기반이 미약한 개발도상국 모두 이 협약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협약은 세계적인 문화다양성 보전을 위한 하나의 시작 단계이지 최종 결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다른 조약과의 관계, 문화권, 문화주권,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다양성과의 관계 등 정립해야 할 분야가 아직 많다. 국제법이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에 대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쟁점에 대한 양자적 혹은 지역적 협력과 국제규범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고일 2009년 6월 17일, 심사일 2009년 6월 22일, 게재확정일 2009년 7월 14일)

주제어 :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협약, 문화권, 문화주권, 문화 활동, 다른
조약과의 관계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의수(역),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0.

UNESCO 한국위원회(역), 지구의 언어, 문화, 생물 다양성 이해하기, UNESCO, 2005.

2. 논문

문시연, “문화적 예외 vs 문화적 다양성 논란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7권 제3호,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박경신,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 사이의 상호지지적인 관계정립을 위하여,” 법과사회 제34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8.

박선희,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과 프랑스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9.

박현석,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의 충돌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6.

서헌제, “문화다양성협약과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연구 제15권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06.

_____,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법리적 연구: 문화상품의 국제교역과 문화권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0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08.

안토니오 루더(Antonio Rudder),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 다양성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2006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국제회의 발표문, UNESCO 한국위원회, 2006.

이재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지위,”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한영,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쟁점 및 한계,” 통상법률 통권 제83호, 법무부, 2008.

조한승,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국제정치-국제법 학제적 조망,”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제4호, 한국정치학회, 2008.

Christoph Beat Graber, “The New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A Counterbalance to the WT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제9권 제3호, 2006.

Guido Carducci, “UNESCO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in the Framework of other UNESCO Conventions,” *Proceeding of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al Rights and Diversit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4-15 November 2006

Nina Obuljen, “Principles of cultural pluralism,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society, with reference to UNESCO’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instruments such as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MULTICULTURAL POLICY FORUM – UNESCO’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Instruments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New Challenges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6 December 2008.

Vesselin Popovski, “Cultural Divers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Paul Meerts(ed.), *Culture and International Law*, Hague Academic Press, 2008.

[Abstract]

Cultural Diversity and International Law - Based o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Byung-Do Park*

Byung-Jun Kim**

In our contemporary age of globalization, the matter of cultural diversity becomes a critical agenda of international society. But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promoted by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gives a challenge to cultural diversity in that it provides an unprecedentedly good condition to build up cultural interactions among nations, while causing imbalance between poor and rich countries. In these situations, it is noteworthy that some of considerations regarding cultural diversity evolve into international norms. As a part of internation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o cultural diversity, the 33rd General Assembly(2005) of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has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hereinafter called ‘the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with a view to recognize why it is necessary to prepare public policies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original culture in each country, nation, region and community; emphas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eparing

* Professor,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 Instructor, Department of Law, Konkuk University.

those policies; promote pro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s in under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with poor cultural infrastructure; and explore possible ways of legal connections with other international rules and systems in the interest of effectively coordinating these efforts. Overall, our international society considers the adoption of said Convention as a meaningful step forward in international activitie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t is convincing to say that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 of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is assuring that culture takes a new standing in international law beyond conventional legal boundaries where importance of cultural diversity has been undervalued in comparison with other conventions.

Although there is no doubt that the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has such a great significance in the aspect of either politics or cultural history, however, it is premature for us to expect any immediate effects of purposes and principles provided in said Convention. Now is the time for many countries to carefully watch how the Article 20 of said Convention (Relationships with Other Conventions), a hottest-button issue in terms of said Convention, should be construed and applied in practice. Possibly, the Article 20 of said Convention demonstrates the furthest ideal achievable at present, but it is difficult to confidently assert that this article is enough to achieve any desired goal of said Convention. Besides, the said Convention has mandatory provisions defined in very weak expressions, although it uses strong and unambiguous terms to confirm the right for sovereign states to adopt and regulate various means and policies to advocate their own cultural diversity. Such an imbalance causes lower expectations for any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 for cultural diversity in international society. Hence, it is concluded that successful enforcement of the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needs to attract more non-membership countries to ratification, even though it has been already enforced in effect. Moreover, it is important that all countries with fundamental differences in cultural system, ranging from advanced countries with developed cultural industry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weak foundation for cultural activities, should take practical part in setting and achieving the goals of said Convention.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make any chance to build a good relationship of said Convention with other existing conventions, as well as relationships of cultural diversity with cultural right, cultural sovereign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 that all international parties can make efforts to materialize ultimate goals of the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all over the world.

Key Words : cultural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cultural right, cultural sovereignty, cultural activities, Relationships with Other Conventions